<별지 제4호> <개정 2015.10.21., 2021.10.13.>

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 신고서

1. 상 호

■ 첨부서류

1-1. 정관(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 1부

1-2.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1부

2. 지점등의 소재지 및 연락처

■ 첨부서류

2-1. 지점등의 위치·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

3. 지점등이 영위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3-1. 인가(등록)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

4.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

- 직원현황(전체직원의 수를 관리직, 영업직등 회사의 특성에 맞게 분류기재)
- 전문인력의 명단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요경력, 전문자격내용 등)
- 시설계획(사무공간 배치계획, 전산설비 내역,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)

■ 첨부서류

4-1.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(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)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

4-2. 사무공간,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 서류 1부

5.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

■ 첨부서류

5-1.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·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

5-2.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

5-3.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

6. 그 밖의 기재사항

■ 첨부서류

6-1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※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,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10항(또는 제271조의2제10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 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